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목 차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작성자]

1. 대리인이 발급·서명한 C/O의 유효성(한-중, 한-미) 1
2. 한-EU FTA 동시송부 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자(한-EU) 2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3. 소급 발급 기산 시점(한-아세안) 3
4. 소급 발급 문구 기재(한-싱가포르) 4
5. 인증수출자 자격 사후 취득 시, 소급 C/O 인정 여부(한-EU) 5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방법]

6.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의 유효성(한-중) 6
7. 원산지결정기준이 RVC인 경우의 표기 방법(공통) 7
8. 원산지결정기준을 약어로 기재한 경우(한-아세안) 8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9.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한-중) 9

[연결원산지증명서]

10. 중간경유국 양수도 물품의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한-아세안, RCEP) 10
11. 분할 수출물품 및 유효기간 만료 원본 C/O 보유시 연결C/O 발급(RCEP) 12

[유효한 상업서류]

12. 원산지신고서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종류(한-EU) 13
13.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의 유효성(한-EU) 14
14. 다자간 거래에서의 유효한 상업서류(한-영) 15

[6,000유로 계산 방법]

15. 비원산지물품 포함 시, 6,000유로의 계산 기준(한-EU, 한-영) 16

[직접운송]

- 16.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종류(한-미) 17
- 17. 직접운송요건 증빙을 위한 비가공증명서(한-인도) 18

[제3국(자) 송장 발행]

- 18. 제3국(자) 송품장 해당 여부(한-아세안) 19

[협정관세 사후적용]

- 19. 협정관세 적용신청 신고내용 변경·정정 가능 여부(한-베트남) 20
- 20. 협정관세 적용 후,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공통) 21
- 21. 협정관세 사후적용 예외 신청(공통) 22

[협정관세 적용 관련 절차]

- 22. 협정관세 신청 일반절차(공통) 23
- 23. 기록보관 의무 및 검증 대응(공통) 24

[기타]

- 24. 수리·개조물품의 관세 면제 적용 여부(공통) 26
- 25.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공통) 27
- 26. C/O와 수입신고서 간 HS번호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방법(공통) 28
- 27. 무역서류 간 정보 불일치(한-아세안) 29
- 28. 누적기준 입증서류(한-아세안, RCEP) 30
- 29. 협정세율 확인방법(공통) 31
- 30. 특별긴급관세 발동 이전 계약운송물품 협정관세 적용(한-호주) 32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란)에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고, 제13란에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 한-중 FTA 제3.15조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 한-미 FTA 제6.15조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둘 이상의 물품(각각 6천유로 이하)이 같은 항공편으로 함께 송부된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각 물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둘 이상의 물품이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 동시에 송부(개별 계약에 따라 개별 운송서류에 의해 물품을 송부한 경우 포함)된 경우 해당 물품들의 가격을 합산했을 때 6천 유로를 초과한다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1항
 -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 나. 총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일수 관련, 선적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해도 되나요?



- ▶ 소급발급 기산 시점은 협정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 다만,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통관원활화를 위해 선적일을 산입·불산입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적일을 불산입하여 소급발급 기간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 >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시기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필리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미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싱가포르, RCEP	싱가포르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RCEP : 선적일 후 1년 내에 소급발급 가능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급 되었으나, ‘소급발급문구’ 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 ▶ 한-싱가포르 FTA 제5.2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상기 협정에서는 소급발급 문구(기재의무 및 기재문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관련 문구(예: 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지 않아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 >

○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협정(예시)

대상 협정	소급발급 문구
한-아세안 FTA (제7조)	ISSUED RETROACTIVELY
한-인도 CEPA (제4.4조)	ISSUED RETROSPECTIVELY
한-중 FTA (제3.15조)	ISSUED RETROACTIVELY
한-베트남 FTA (3.14조)	ISSUED RETROACTIVELY

※ 자세한 사항은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수출자가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시 또는 수입 후 2년 이내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소급 작성 가능합니다.
 - * 「FTA 관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 당시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소급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
- 따라서 수출 이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제시한다면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 >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사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한-중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WO' 이지만, C/O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 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WO :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P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 한-중 FTA 제3.2조에 따라 ①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WO(완전생산)이라도 해당 물품이 WP(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 한-중 FTA 제3.2조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는 실제 충족한 부가가치비율 작성이 가능한지?



-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협정에서 정한 PSR 비율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상품이 협정에 따라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 “RVC 50%”를 기재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 >

○ FTA 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13조

-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H+Specific Process' 로 기재해야 하나 약어인 'CTH+SP' 로 기재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Specific Process'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면, 약어 기재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 >

○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방법)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한-중 FTA 적용 시,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CO 발급이 면제되나요?



- ▶ 한-중 FTA 제3.19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이 면제됩니다.
- ▶ 다만, 상기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한-중 FTA 제3.19조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 FTA 관세법 제8조

-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수입 통관후 국내에서 양수도 된 물품의 양수인이 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 C/O를 발급받아 한-아세안 FTA 또는 RCEP을 활용할 수 있나요?



- ▶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보세상태 (수입통관전)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와 관계없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연결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중간 경유국에서 양수도가 발생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반면, RCEP의 경우 연결증명서 발급시 중간 경유국에서의 양수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RCEP 협정문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수도 시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2. 중간 경유 당사국(The issuing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 RCEP 협정문 제3.19조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제3.24조(검증)에 언급된 검증 절차는 연결 원산지 증명에도 적용된다.



분할 수출물품이나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 RCEP 협정문 제3.19조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기반으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동 협정문에서는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본 원산지증명 상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RCEP 협정문 제3.19조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략)



B/L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산지신고서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포장명세서,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이며, B/L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4년.6월,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상업서류의 종류를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포장명세서,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선하증권(B/L)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품명, 수량, 규격 등의 물품 명세가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아 유효한 상업서류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제1항

1. (중략)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 당사국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라도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예 : EU 인증 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업서류는 당사국 수입자(예: 한국)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란? ('16년, EU 집행위원회 의견 요약)

-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제품을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경우, 해당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

< 관련 규정 >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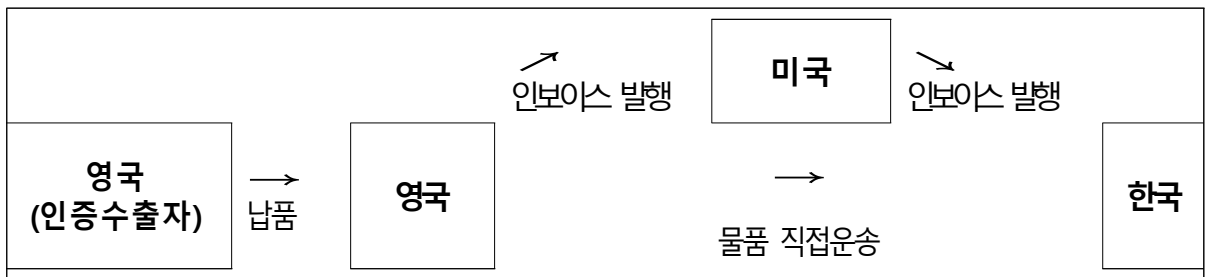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자간 무역거래에서 협정 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발행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 작성이 가능한가요?



- ▶ 다자간 무역 거래 시, 협정 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발급된 상업서류는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예를 들어 거래 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영국 소재 업체가 제3국인 미국 소재 업체에 발행한 인보이스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 ▶ 미국 소재 업체가 당사국 수입자인 한국 업체에 발행한 인보이스에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동시 수출 시, 6,000유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원산지 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①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 한-영 FTA 운영지침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함
 - '제품의 원산지' 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상업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미국에서 선적한 원산지 물품을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해당 서류로 ①전체 운송경로, 비당사국에서의 ②비조작 및 ③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 >

○ FTA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8조

-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물품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 보세창고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로 직접운송 증빙이 가능한가요?



- ▶ 한-인도 CEPA 제4.8조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중국 보세창고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는 세관당국이 발행한 서류가 아니므로, 비당사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에 따르면,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 서류에는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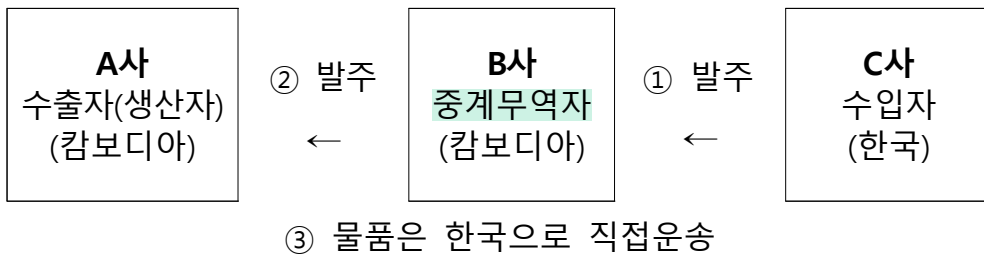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 한-인도 CEPA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 나.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의 사본



아래 그림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 소재한 B사(수출자 또는 생산자 외 기업)가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제3국 송장에 해당하나요?



- ▶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의 당사국이므로,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B사가 발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3국 송장은 수출입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서 발급하는 송장으로, 제3자 송장과 구별됩니다.
- ▶ 한-아세안 FTA는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3란의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하며,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상기 사례는 제3국 송장이 아니라 제3자 송장이 발급된 경우이므로, 원산지 증명서 제13란과 제7란에 제3국 송품장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먼저,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야 하며,
- 이후 FTA 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 **협정관세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 사례**

-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 * (예시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 (예시2)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해당하는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FTA관세법 제9조제1항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였으나, 수리 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분석한 결과 HS 번호가 변경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이 'CC' 로 변경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 상기 사례의 경우, 기존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CTH)으로 변경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CC)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정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및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
 - ② 제출서류 심사(필요 시 보완요구)
 - ③ 요건 충족 시 정정 승인
 - ④ 요건 미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 배제 또는 원산지검증 요청 가능
 - ⑤ 세액 변동 발생 시 보정·수정·경정 등 관련 절차 이행

< 관련 규정 >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사례

-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2)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 관련 규정 >

○ FTA관세법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 FTA관세법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수입 시 협정세율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 시 협정세율 적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FTA 발효국 여부 확인
- ②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③ 협정세율 및 관세혜택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④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 구비
- ⑤ 수입신고 시 협정세율 적용 신청
- ⑥ 관련 서류 사후 보관

구분	협정세율 적용신청
적용 방법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신청 시기	원칙수입신고 수리 전, 예외수리 후
제출 자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름), 반복 분할 수입 등의 경우 제외 ②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 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③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 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④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 관련 규정 >

- FTA관세법 제8조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 또는 전자본으로 보관해도 가능한가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사본(전자본 포함)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나요?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기간 내에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등은 「FTA 관세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 FTA관세법 제15조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구분	보관 서류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포함) 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수리·개조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동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동법 제3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협정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며,
- ▶ 수리/개조의 범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 관련 규정 >

○ FTA관세법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 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협정상 허용 범위 이내인 때에는 완제품을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된 경우
 -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역외산재료를 사용한 경우
- ※ 주의사항① : 한-미 FTA의 경우 최소허용수준 적용이 배제되는 품목(협정부속서 6-나)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주의사항② : EFTA·EU·튀르키예·영국과의 협정은 최소허용수준을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일반품목에 대한 협정별 최소허용수준 허용 비율 → 가격기준으로 산출

협정	기준가격	허용 비율
칠레	조정가격	8%
싱가포르	FOB가격에 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10%
미국, 호주, 콜롬비아	조정가치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FOB*	
EFTA, EU,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공장도 가격	
캐나다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협정상대국에서 발급한 C/O와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C/O상 HS번호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C/O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협정상대국에서 C/O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이후 원산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FTA 관세법」 제9조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8.4.)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1.3.18.)



무역서류 간 기업 주소가 상이한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한 무역서류(상업서류, 선적서류 등)와 C/O상의 기재 정보는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무역서류와 C/O가 대상으로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연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부 정보의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C/O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협정문 또는 부속서에서 특정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나 물품명·수량 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단순 보완자료 제출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정정 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한-아세안 FTA, RCEP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는?



- ▶ (수입물품) 적용 대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원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는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등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 ▶ (수출물품) 각 회원국 간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적 입증서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협정상 합의 또는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수입국(상대국) 세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RCEP 제3.4조 (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여긴다.



수입 예정 물품의 협정세율 확인 방법은?



- ▶ 수입세율 및 협정관세율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 정확한 품목분류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 ▶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에서 확인 가능

< 관련 규정 >

○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1~별표24의3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발동 당시 이미 운송 중인 물품도 부과 대상이 되나요?



- ▶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특별긴급관세 조치 발동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운송 중인 물품은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또한, 기준발동물량 소진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 FTA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제9항

-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 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